

서울고등법원(인천) 2021. 1. 29 선고 2020나1192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인천) 2021. 1. 29 선고 2020나11924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5. 20 선고 2019가합10181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스트

담당변호사 김성규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중

변론 종결2020. 11. 27.

판결 선고2021. 1. 29.

제1심판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5. 20. 선고 2019가합101815 판결

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32,088,826원 및 그중 74,868,000원에 대하여는 2020. 5. 21.부터,

57,220,826원에 대하여는 2020. 11. 28.부터 각 2021. 1.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값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40,506,666원 및 그중 383,285,840원에 대하여는 2020. 5. 21.부터, 57,220,826원에 대하여는 2020. 11.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5,154,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2면 5행부터 3면 12행까지, 표를 제외하고 계산, 이하 같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3면 표와 11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피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0. 8. 25. 피고 앞으로 2007. 12.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제1심판결 3면 12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의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위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제공한 분양대금 중 383,285,840원과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납부한 분양잔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변제한 대출금 원금 57,220,826원의 합계액인 440,506,666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 C, 피고 및 피고의 처와 자녀들이 다 함께 거주하기 위하여 피고가 분양받은 것으로, 분양대금에 원고의 돈이 일부 투입되었을 수는 있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를 신탁한 것은 아니며,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원리금은 피고가 상환한 것이지 원고가 대신 변제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명의신탁약정의 체결 여부 및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4면 9행부터 8면 10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1) 인정하는 부분 가) 계약금 중 20,000,000원

갑 제6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2007. 12. 26. 원고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Q)에서 20,000,000원이 인출된 사실, ② 2007. 12. 26. 이 사건 아파트의 계약금 및 옵션계약금으로 합계 56,413,000원이 납입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아파트의 계약금 중 일부를 원고가 조달하였음을 피고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위 계약금 중 20,000,000원은 원고의 자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1차 중도금 63,000,000원

H의 대표자는 피고로 되어 있었으나 H의 실제 운영자는 원고였고, 피고는 트럭 운전 업무 등을 하며 원고로부터 월급을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갑 제8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피고 명의로 H를 운영하는 동안 H의 사업용 계좌를 관리하였던 사실, ② 2008. 6. 20. 이 사건 아파트의 1차 중도금으로 63,000,000원이 납입되었고, 위 돈은 H의 사업용 계좌 중 하나인 피고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R, 이하 '이 사건 사업용 계좌'라고 한다)에서 이체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1차 중도금 63,000,000원은 원고의 자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2차 중도금 중 263,400원

갑 제9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2008. 12. 22. 이 사건 아파트의 2차 중도금으로 63,000,000원이 납입된 사실, ② 위 돈 중 263,400원은 원고가 관리하는 이 사건 사업용 계좌에서 이체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차 중도금 중 263,400원은 원고의 자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잔금 중 74,868,000원

갑 제10, 11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V조합 성곡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0. 7. 19. 원고 명의로 V조합에서 10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② 원고가 2010. 7. 23. 원고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S)에서 100,000,000원을 인출한 사실, ③ 2010. 7. 23. 이 사건 아파트의 1차 잔금으로 74,868,000원이 납입된 사실, ④ 피고의 명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T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U)에 74,868,000원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잔금 중 74,868,000원은 원고의 자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마) 잔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변제한 대출원금 57,220,826원¹⁾ 갑 제1, 13, 27, 29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N은행 업무지원센터장에 대한 2019. 10. 24.자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 이 법원의 N은행에 대한 2020. 9. 29.자 및 2020. 10. 19.자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7. 29. 피고 명의로 T은행에서 269,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채권최고액 322,8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사실, 2010. 7. 29. 이 사건 아파트의 잔금(위 라)항의 1차 잔금과는 별개의 잔금이다)으로 67,034,760원이 납입된 사실, 원고는 2013. 6. 10. 피고 명의로 N은행에서 269,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채권최고액 322,8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N은행 대출금으로 위 T은행 대출원리금을 변제하면서 T은행의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 그 후 원고는 2015. 4. 27. 피고 명의로 N은행에서 259,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2013. 6. 10.자 N은행 대출금의 2015. 4. 27. 기준 대출원금 259,299,174원을 변제한 사실, 위 2013. 6. 10.자 N은행 대출금에 대하여 2013. 6. 28.부터 2015. 4. 27.까지 매월 약 450,000원씩 총 9,700,826원(= 대출원금 269,000,000원 - 2015. 4. 27.기준 대출원금 259,299,174원)의 원금이 변제된 사실, 또한 위 2015. 4. 27.자 N은행 대출금에 대하여 2015. 5. 27.부터 2020. 10. 27.까지 매월 720,000원씩 합계 47,520,000원(= 720,000원 × 66개월)의 원금이 변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0. 7. 29. 납입된 잔금 67,034,760원은 같은 날 T은행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2018. 2. 18.부터 2019. 5. 20.까지 매월 피고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1,5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각 송금일로부터 수일 내에 위 계좌에서 2015. 4. 27.자 N은행 대출금의 원리금으로 매월 1,200,000원가량이 출금되었으며, 원고는 2019. 9. 18.에도 위 계좌에 1,500,000원을 송금한 점, 피고 명의의 위 N은행 계좌는 그 통장을 원고가

보관하는 등 사실상 원고의 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대출원리금을 자신이 상환해오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피고의 자금으로 이를 상환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을 제10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 위와 같은 피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대출관계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잔금으로 사용된 대출금 중 변제된 대출원금 합계 57,220,826원(= 9,700,826원 + 47,520,000원)은 원고가 원고의 자금으로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써 원고는 피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을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으로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바)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215,352,226원(= 20,000,000원 + 63,000,000원 + 263,400원 + 74,868,000원 + 57,220,8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하지 아니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중 2007. 12. 26. 납입된 계약금 및 옵션계약금 중 위 나. 1)가)에서 인정된 20,000,000원을 초과하는 36,413,000원, 2008. 12. 22. 납입된 2차 중도금 62,736,600원, 2019. 6. 22. 및 2009. 12. 21. 납입된 3차 중도금 63,003,160원, 2009. 12. 21. 및 2010. 3. 22. 납입된 4차 중도금 63,001,680원 등 합계 225,154,440원도 원고의 자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반환을 구하고 있으나, 갑 제7, 23 내지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225,154,440원이 원고의 자금으로 납부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멸시효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계약금 중 20,000,000원, 1차 중도금 63,000,000원, 2차 중도금 중 263,400원 합계 83,263,400원에 관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07. 12. 26. 계약금 중 20,000,000원, 2008. 6. 20. 1차 중도금 63,000,000원, 2008. 12. 22. 2차 중도금 중 263,400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으로 제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계약명의신탁 약정은 처음부터 무효이고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매수자금이 제공된 시점에 이미 발생하여 확정되는 것이므로 위 각 제공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가 위 각 부당이득반환채권 성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9. 4. 29.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83,263,400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8. 8. 5. 원고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건을 발단으로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비로소 명의신탁 해지 내지 무효 주장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므로 위 날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0. 8. 25.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주장하나,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하는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의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권리행사의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각 매수자금을 제공한 날이 아닌 위 2018. 8. 5. 내지 2010. 8. 25.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위 2018. 8. 5.경까지는 채무승인을 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거나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32,088,826원(= 부당이득인정 금액 215,352,226원 - 소멸시효완성 금액 83,263,400원) 및 그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74,868,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인 2020. 5. 21.부터, 원고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57,220,826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11.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11. 28.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전지원

판사서여정

판사임솔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 부분이다.